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4월 11일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보수 인하
  - 2 법시행령 개정(2012.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3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 4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5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C-i 수익증권 추가, 종류 C-w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보수 인하: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p> <p>종류 C-w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10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03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p> <p>종류 C-w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00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p>2. 법시행령 개정(2012.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3.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생략 (2) 수시 공시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현행과 같음 (2) 수시 공시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p>

4.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①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3년 3월 31일)
5.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3년 3월 31일)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보수 인하
- 4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 C-i 수익증권 추가, 종류 C-w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보수 인하: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p> <p>종류 C-w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10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p>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03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p> <p>종류 C-w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p> <p>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 0.8000% 판매회사보수 : 0.0000% 신탁업자보수 : 0.0375%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50%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4.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제2부 6.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6.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①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3년 3월 31일)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보수 인하
- 2 자본시장 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 보수 인하: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lt;생략&gt;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A1수익증권            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            종류 C-e수익증권  <b>(신설)</b>             종류 C-w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lt;현행과 같음&gt;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A1수익증권            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            종류 C-e수익증권  <b>종류 C-i수익증권</b>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종류 C-w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p>
<p>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 보수 인하: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종류 A1수익증권            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            종류 C-e수익증권  <b>(신설)</b>            종류 C-w수익증권             ②~⑤ &lt;생략&gt;</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종류 A1수익증권            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            종류 C-e수익증권  <b>종류 C-i수익증권</b>            종류 C-w수익증권             ②~⑤ &lt;현행과 같음&gt;</p>

<p>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 보수 인하: 제39조(보수)</p>	<p>제39조 (보수)          ①~② &lt;생략&gt;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는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 7. &lt;생략&gt;  <b>(신설)</b>   <b>8. 종류 C-w 수익증권</b>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8.00 ]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1.00 ]</b>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75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150 ]   <b>9. 종류 A-u2 수익증권</b>          &lt;이하 생략&gt;</p>	<p>제39조 (보수)          ①~② &lt;현행과 같음&gt;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는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 7. &lt;현행과 같음&gt;  <b>8. 종류 C-i 수익증권</b>  <b>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8.00 ]</b>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30 ]</b>  <b>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75 ]</b>  <b>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150 ]</b>   <b>9. 종류 C-w 수익증권</b>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8.00 ]  <b>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0 ]</b>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375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150 ]   <b>10. 종류 A-u2 수익증권</b>          &lt;이하 현행과 같음&gt;</p>
<p>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 보수 인하: 제40조(판매수수료)</p>	<p>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lt;생략&gt;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1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1.0          2. 종류 A-u2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          3.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b>(신설)</b>, 종류 C-w 수익증권: 없음           ④ &lt;생략&gt;</p>	<p>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lt;현행과 같음&gt;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1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1.0          2. 종류 A-u2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          3.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b>종류 C-i수익증권</b>, 종류 C-w 수익증권: 없음           ④ &lt;현행과 같음&gt;</p>
<p>1. 종류 C-i수익증권 추가,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및 판매 보수 인하: 제41조(환매수수료)</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lt;생략&gt;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A. 3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b>(신설)</b>, 종류 C-w 수익증권          A.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90일이상 18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50%          3. 종류 A-u2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③ &lt;생략&gt;</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lt;생략&gt;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A. 3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b>종류 C-i수익증권</b>, 종류 C-w 수익증권          A.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90일이상 18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50%          3. 종류 A-u2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③ &lt;현행과 같음&gt;</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 &lt;생략&gt;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5. &lt;생략&gt;  <b>(신설)</b></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 &lt;현행과 같음&gt;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5. &lt;현행과 같음&gt;  <b>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b></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lt;생략&gt;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b>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b>           2. ~ 5. &lt;생략&gt;          ③ ~ ⑥ &lt;생략&gt;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를 통하여</b>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⑨ &lt;생략&gt;</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lt;현행과 같음&gt;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b>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유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b>          2. ~ 5. &lt;현행과 같음&gt;          ③ ~ ⑥ &lt;현행과 같음&gt;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b>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b>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⑨ &lt;현행과 같음&gt;</p>
--	---	---